





나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도시계획과

1987. 5.

서울특별시청

공람 개요(도시계획안)

구분	도시계획안	위치	규모	비고
도로	폐지	성북구 성북동 279-8 288-3	B= 12미터 L= 110미터	
도로	폐지	석관동 176번지 6호	B= 6미터 L= 40미터	
학교	일부변경 (추가지정)	성북구 경릉동 431-62번지일대	△ 1042.9㎡	계정 11393.9 계 12435.9
도로	신설	성북구 돈암동 512번지 331호 - 620번지	B= 10미터 L= 200미터	

제 3 안

수신 : 서울특별시청

참조 : 시설계획과장

제목 : 같은 건

1. 우리구 관내 성북동, 석관동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

변경결정(폐지)와 삼선동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 및

용동소재 도시계획시설(경수국고) 변경(추가지정) 결정에 대하여 도시

법 제 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2 구정에 의하여 변경과 같은 도시

계획안을 공람공고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을 보고합니다.

첨 부 1. 공고문 사본 1부
2. 도면 각 1부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당.
제 4 안
수신 : 서울특별시
참조 : 공보관
제목 : 신문 및 시보 게재 요청
1. 우리구 관내 성북동, 석관동, 삼선동, 경동동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) 입안내용에 대하여 일간신문 및 시보 게재 요청합니다.
첨 부 : 공고문 사본 4부 및 공문서 사본 1부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당.
제 5 안
수신 : 도시계획과(공공행정과)
제목 : 도시계획시설 입안·통보
1. 우리구 관내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) 결정 변경 결정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람공고증임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바람.
첨 부 : 1. 공문서 사본 1부
2. 도면 각 1부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당.

시공

도시계획과(공공행정과) 인

제 6 안

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같은 건

1.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, 학교) 변경결정모자 하오니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글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발람)

수신처 : 1. 성북구 경동2동 429- 11 최 종 성

2. " 429- 13 원 은 종 .

3. 장외동 65- 172 김 해 자

4. 율곡동 43 최 근 삼

5. 삼천2가 389번지 한성대학

6. 석관동장, 삼선동장, 성북1동장, 경동2동장. 같.



1991. 10. 21

서울특별시 공고 제

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복지 및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(추가지정) 결정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아랫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복지 및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(추가지정)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랫 장소에서 14일간 공람합니다.

2.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공람기간 : 37. 5. - 87. 5. (14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도시계획과

1987. 5.

성북구청장 별시장

공 랑 개 요 ( 도시계획안 )

구분	도시계획안	위치	규모	비고	의견
도로	복지	성북구 성북동 275-8 ~ 288-3 간	B = 12미터 L = 110미터		성북구청장
도로	복지	성북동 176번지6호	B = 6미터 L = 40미터		성북구청장
도로	결정 (신설)	돈암동 512-331 ~ 620번지간	B = 10.미터 L = 200미터		성북구청장
학교	일부변경 (추가지정)	성북구 경동동 431-62일대	A = 1042.9 <sup>2</sup>	기정 11.92 <sup>2</sup> 기 12.92 <sup>2</sup>	성북구청장

복 명 서

소장

명예 의거 장례를 4리까지 원대 도사령사(복) 변경 장례(원부추) 안 화장은 2리하로 4리까지 복명 합니다.

87. 5.

지방통계청장

구 청 장 귀하.

다 음

시인

위	키	안	건	현	황	
장동서	도사령사	향	지정도지	비행장	변경장	
-19리	(회고)	향	지정도지	주변	(원부추)	

첨 부: 도면 및 사진 각 1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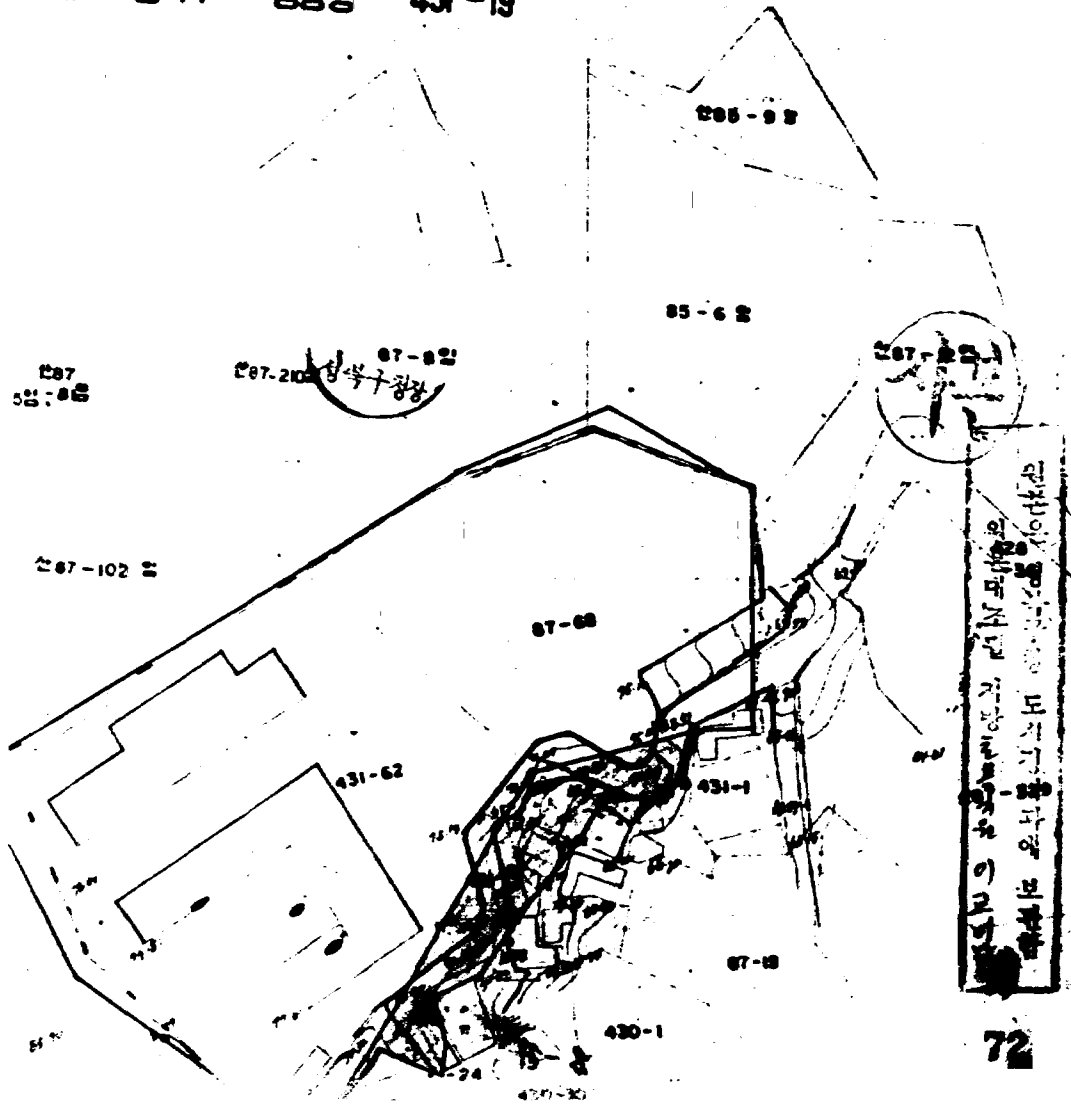
				구 청 장
정 비	도사령사	도사령사	부 청 장	
	김	진	김	

8-1

공제회... (vertical text on the right margin)

# 서울시 (용) 증량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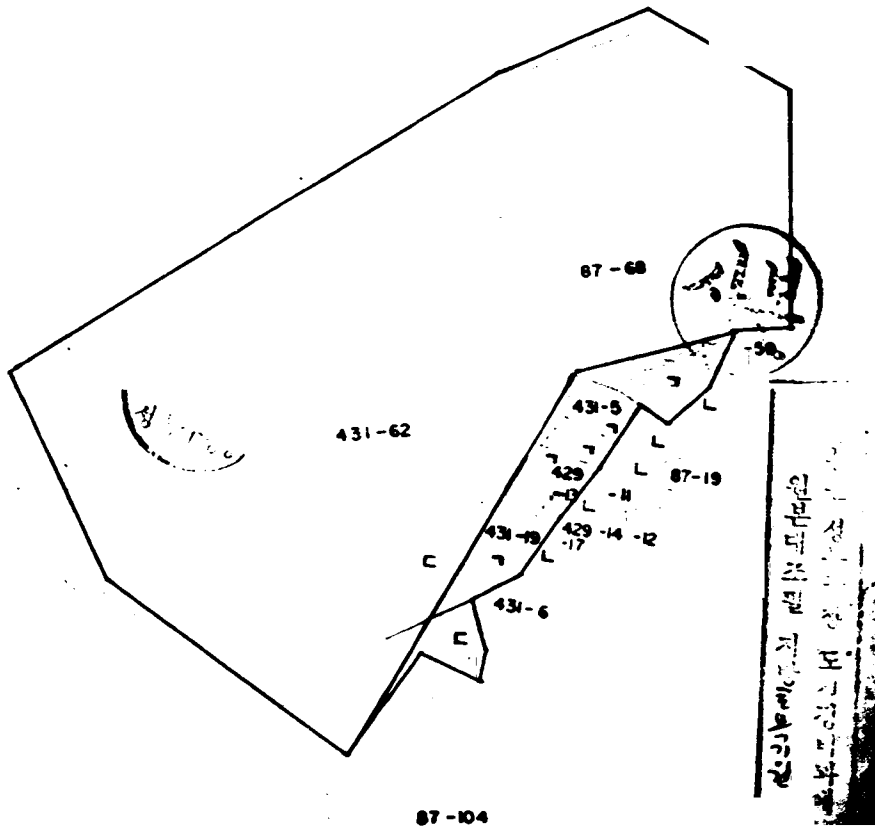
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31-19



대한민국 국토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
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을  
시행하기 위하여  
작성된 지도







15-10

# 복 명 서

명예 위하여 도사계좌사설(도로) 결정 입안 및 폐지  
현장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.

1987. 5. 26

지방토목기원 이근발

## 구 정 장 키 하

다 음

순위	위 치	결정안	조 사 내 용	비 고
1	도안비2 ~ 도안비10번	도사계좌사설 (도로)입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선 18쌍으로 우회 87.5.15과</li> <li>도로 개설 예정</li> <li>• 구배 1% ~ 2% 안</li> <li>• 소선 용원일</li> <li>• 지방에서 연결 도로 및 소선 정도 6m</li> <li>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도로일</li> </ul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width: 40px; height: 4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auto;"> <span style="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A</span> </div>
2	석관사	도사계좌 사설(도로)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교 3로(19.1.10) 사설 결정 및</li> <li>지적조사됨</li> <li>• 하천로 개설로 본 도사계좌 도로 설치</li> <li>필요성이 없는 도로이며 의무간(120m)</li> <li>이 서교 2로(기 7.24) 2 B=2가</li> <li>2 변경 결정됨</li> </ul>	B=6가 C=4가
3	성당동 2가 ~ 288가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초 결정된(건교 581로 기. 1. 30)</li> <li>도사계좌 도로를 서교 6로(기. 12. 18)가</li> <li>변경 결정서 의무간 미달거 구안함</li> </ul>	D=14가 E=160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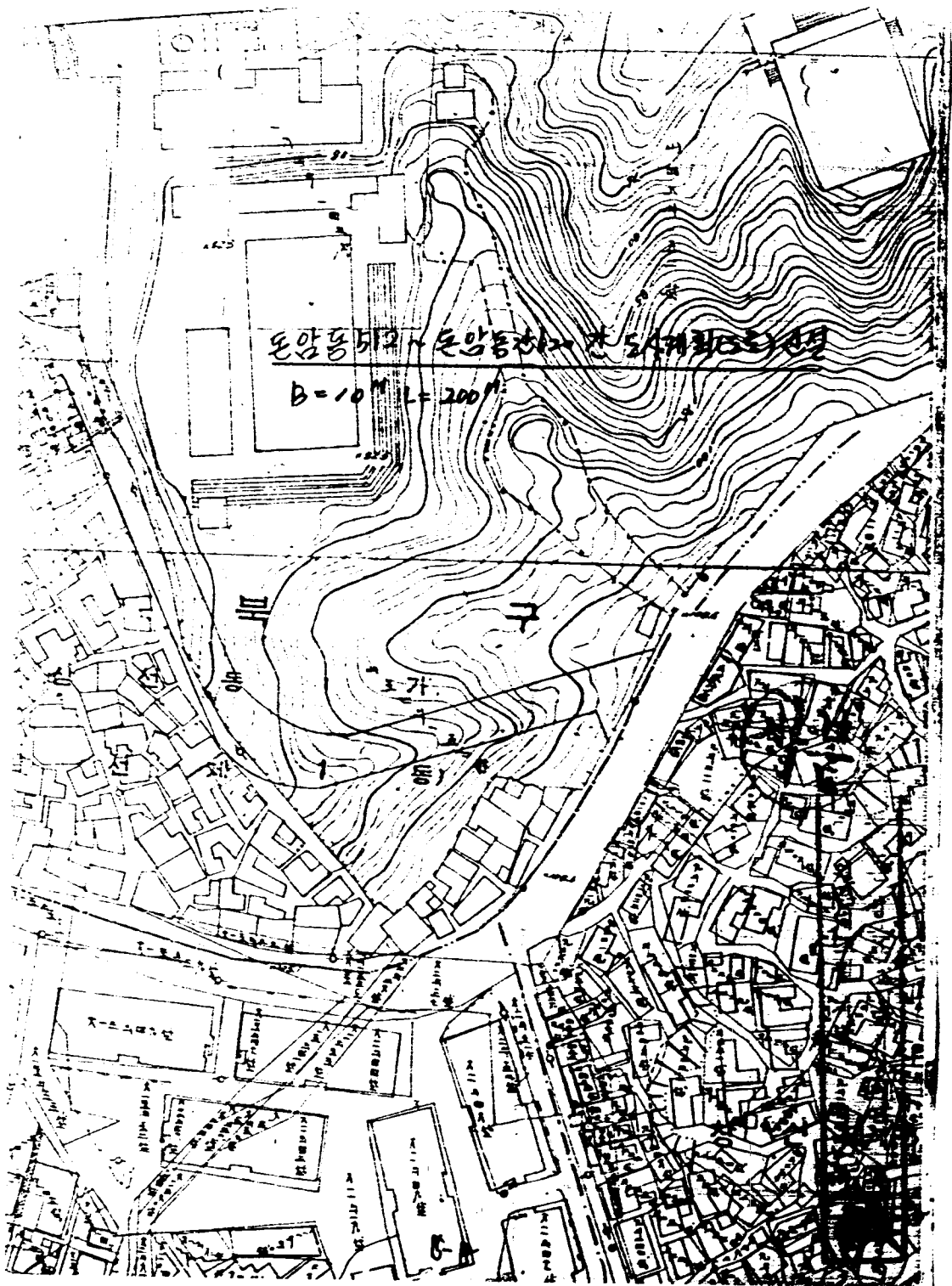
첨부: 도면 각 부록

구 정 장 키 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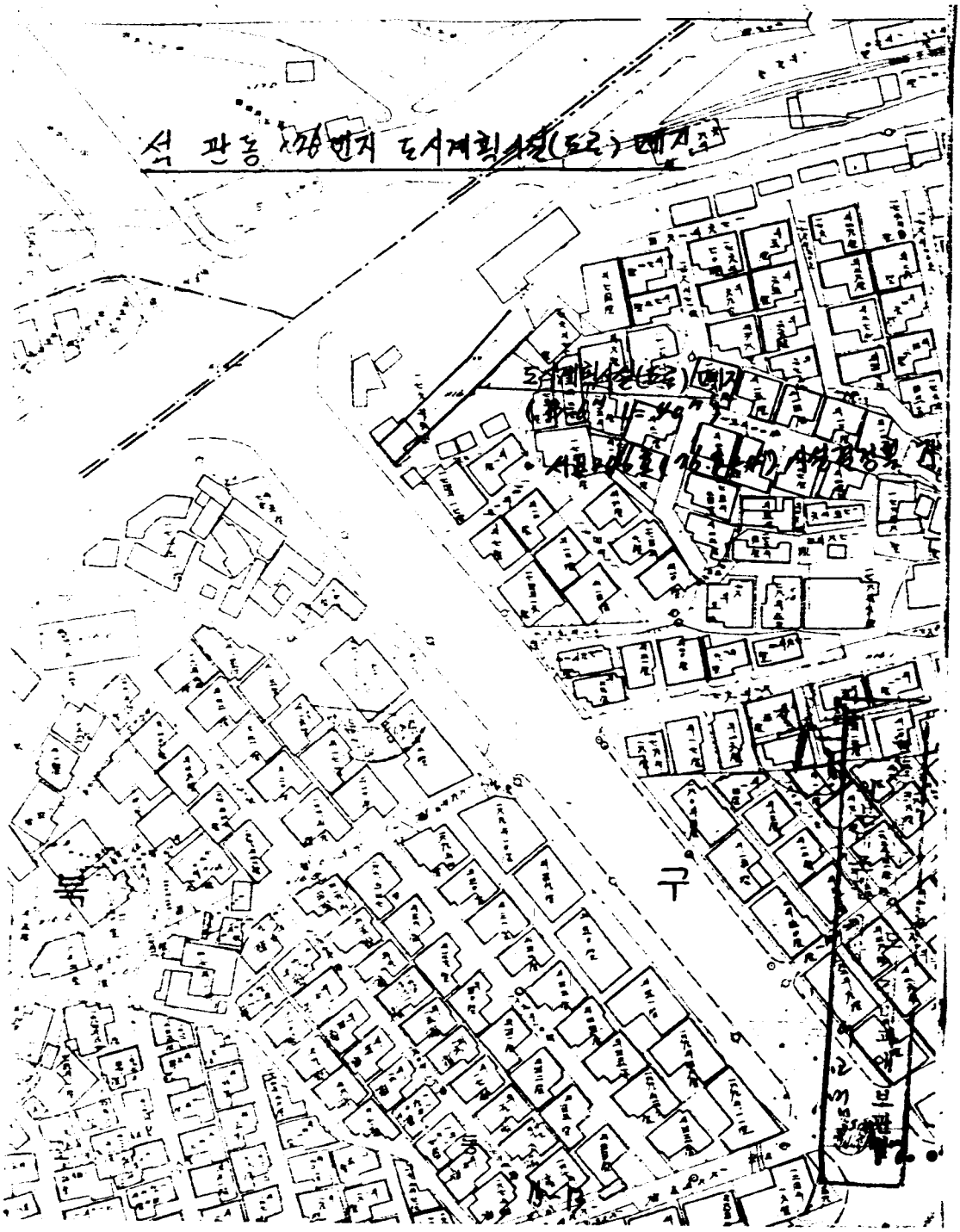
15-11

전리 계장	도사정리계장	도사정리계장	부 조 직
/	/	/	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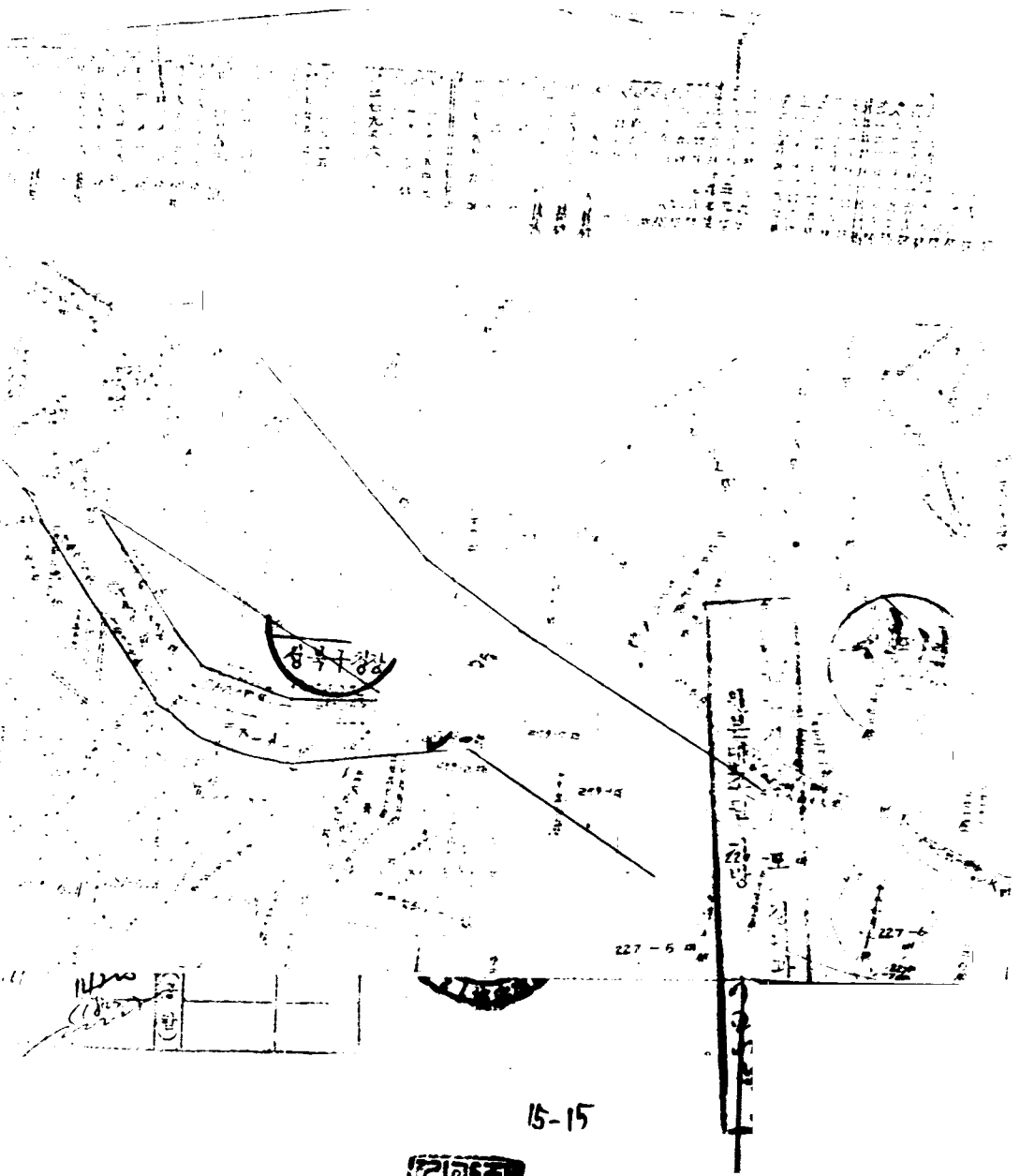
15-11  
 15-11  
 15-11



석관동 2가 번지 도시계획설(52) 대지도







15-15



이 자 지 1 =